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1
----------	------

발의연월일 : 2016. 8. 17.

발의자 : 주승용 · 이춘석 · 장정숙  
김관영 · 정동영 · 최도자  
박준영 · 윤영일 · 강창일  
노웅래 · 이용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지 규정의 적용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지 못하여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를 “노외주차장관리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의 설치자가 관리 중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u>노 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u>노 외주차장관리자----- ----- ----- -----. -----.</u></p> <p>② (현행과 같음)</p>